

#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전통시장 내에 군에서 마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, 발생한 어려운 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,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상인들 및 상인회의 이용부담을 줄여,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사용료 규정 신설(안 제31조의2)

-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1,000분의 10 개별조항 마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 2. 16. ~ 2024. 3. 7.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##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료) 법에 따라 취득한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31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료) 법</u>  <u>에 따라 취득한 공유재산의 연</u>  <u>간 사용료는 「평창군 공유재산</u>  <u>관리 조례」 제20조제3항에도</u>  <u>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</u>  <u>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.</u>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경제과장 이 서 진
연락처	(033) 330 - 2761